

발송처

대구지방법원

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

42027

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 
에이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

원고(항소인  
)

임그루



2097065-455083 ↓  
(민사합의과 제8-1민사부)  
2023-004-312659-006

이 사건의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

2023나 312659 손해배상(국)

예정 기일 :

담당재판부 : 제8-1민사부

법원사무관 최은혜

직통 전화 : 053-757-6454

팩 스 :

e-mail :

재판부 이메일 주소는 문의사항을 연락하기 위한 연락처이므로 재판부 이메일 주소로 전자  
문서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제출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 
사건진행과 관련된 정보(송달과 확정내역 포함)는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  
(<http://www.scourt.go.kr>) '나의사건검색' 란에서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.  
다만, 부동산등경매사건은 대한민국법원 경매정보홈페이지(<http://www.courtauction.go.kr>)  
경매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


# 대 구 지 방 법 원

## 제 8 - 1 민 사 부

### 판 결

사 건 2023나312659 손해배상(국)  
 원고, 항소인 임그루  
 경북 울진군 울진읍 새마실5길 13, 에이동 103호(읍내리, 한국통신사원아파트)  
 피고, 피항소인 대한민국  
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한동훈  
 소송수행자 박민제  
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울진군법원 2023. 5. 24. 선고 2023가소 93 판결  
 변 론 종 결 2023. 12. 13.  
 판 결 선 고 2024. 1. 24.

### 주 문

1.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3.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문서 좌측 상단에 바코드가 있습니다.



www.scourt.go.kr

문서 출력용 바코드

##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20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(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).

## 이 유

### 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,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제1심 및 당심에서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

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'2. 고치는 부분'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### 2. 고치는 부분

○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7행 "1,670만 원의 손해를 보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,6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"를 "2,030만 원(=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 1,640만 원 + 핸드폰 개통과 관련한 비용 190만 원 +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인한 벌금 200만 원)의 손해를 보았는바, 피고는 원고에게 2,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"로 고친다.

○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2의 나항 '1) 경찰이 2022. 4. 21.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'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.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위변조 방지용 바코드 인코딩



www.ecourt.go.kr

공민소송기록관리시스템

『1) 경찰이 2022. 4. 21.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여부

갑 제4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에 의하면, 원고가 2022. 4. 21. 울진경찰서 장유정 수사관과 통화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을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된다.

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조직원들이 점조직으로 분산되어 있고,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자신들의 신원이 특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원이 아닌 사람을 기망하여 수거책으로 이용하고 있어 조직원 검거가 쉽지 않은 점, ② 이러한 범죄의 특성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개통한 핸드폰의 수거현장에서 경찰관이 잠복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거자는 단순 렉서비스 종사자일 가능성이 커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, ③ 경찰은 2022. 4. 25. 원고가 진정한 내용에 기반하여 원고의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점, ④ 경찰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통신수사, 아래 2)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CCTV 설치 확인 수사 등을 하였으나 해당 전화는 대포폰이고,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하여 수사중지 결정에 이르게 된 점, ⑤ 위와 같이 수사중지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은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지 2022. 4. 21.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,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수사기관이 2022. 4. 21. 곧바로 수사를 개시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』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문서 번호 및 내용을 바코드로 확인합니다.



www.scourt.go.kr

문서출력확인바코드

○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2행 "인정될 뿐이다"를 "인정될 뿐이고, 이 법원의 올진 군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, 위 한국통신사원아파트 A동 103호 부근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"로 고친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.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.

재판장

판사

정세영

정 세 영



판사

조세진

조 세 진



판사

윤남현

윤 남 현



※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# 정본입니다.

2024. 1. 25.

대구지방법원

법원사무관 최은혜



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(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)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(대구지방법원)에 제출하여야 합니다(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).

\*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.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(번호)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,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